

영등포구의회
제191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영등포구청장 제출】



2015. 10. 19

行 政 委 員 會
專 門 委 員 金 基 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1. 경 과

의안 제82호로 2015년 10월 7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5년 10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지역 안전 및 재난 총괄 조정, 안전문화 확산 등 사회 안전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총괄 수행하는 조직을 구성하고, 행정환경의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조직으로 개편하여 운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재난안전 전담 부서인 ‘도시안전과’를 안전건설국에 신설

나. 구민이 이해하기 쉽고 업무 성격에 맞는 부서명으로 변경

- 세무과 → 징수과
- 안전치수과 → 치수과

다. 팀 재배치에 따른 국간 업무 이관

- 자치법규안의 심사, 소송에 관한 사항 : 재정국으로 이관
- 기록물관리 및 문서관리·보존에 관한 사항 : 행정국으로 이관
- 민방위 기본계획의 수립, 민방위대 편성, 민방위 훈련 및 비상대비에 관한 사항 : 안전건설국으로 이관

4. 참고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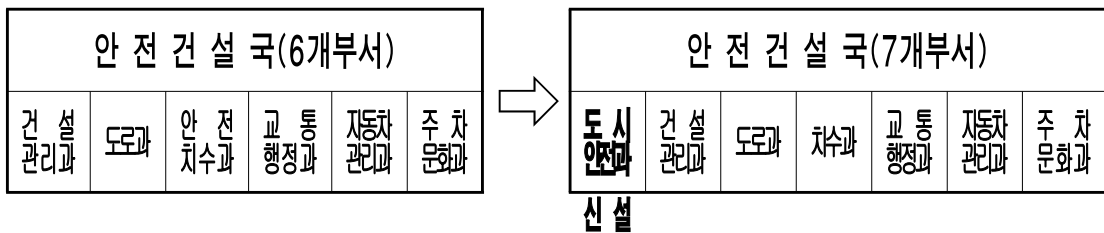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12조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나. 예산 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5.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영등포구의 재난 및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재난안전 전담기구를 신규 설치하는 등 행정환경 변화에 맞게 조직을 개편하려는 것으로써 종전 5국 1담당관 29과가 5국 1담당관 30과로 개편되어 1개 부서가 안전건설국에 신설되는 것임.



-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신설 예정인 ‘도시안전과’는 종전 ‘안전치수과’의 안전·재난관리 업무와 ‘자치행정과’의 민방위 업무 및 ‘홍보전산과’의 통합관제운영 업무를 이관 받아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와 안전문화 활동 등 지역 재난대응의 컨트롤타워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려는 것임.

참고로, 서울시 자치구 25개구 중 36%인 9개구¹⁾가 재난 안전 전담기구를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음.

- 또한, ‘세무과’를 ‘징수과’로 명칭을 변경하여 구민들이 부서에서 하는 일을 쉽게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전치수과’는 ‘치수과’로 변경하여 하천·빗물펌프장 관리 등 치수분야 업무 담당 부서로서의 기능을 갖도록 하였음.
- 그 밖에, 자치법규안의 심사 및 소송업무와 지방의회 업무를 분리하여 법무행정의 전문화와 효율성을 제고 하였으며, 기록물관리 및 문서관리·보존 업무를 민원처리 부서에서 처리 하도록 하여 업무의 연계성과 민원 편의성을 추구하였음.
- 구민 안전을 위한 통합적 안전관리 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재난안전 전담기구인 ‘도시안전과’를 설치하는 것은 안전에 대한 구민들의 높은 관심과 이에 대한 대응성을 강화하는데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됨.
- 다만, 부서명칭 변경, 업무이관 등의 조직개편이 그 동안 같은 내용으로 반복되어 구민에게 혼란과 혼선을 주고 행정력을 낭비하는 사례가 없었는지 사전에 면밀한 검토가 요구됨.

1) 용산구, 동대문구, 중랑구, 양천구, 금천구, 관악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참 고 자 료

1 지방자치법

제112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적정하게 운영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2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시·군·구의 기구설치기준) ① 시·군·구 본청의 실·국이나 과·담당관과 자치구가 아닌 구의 과·담당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시·군·구 본청에 두는 실·국이나 실·과·담당관의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시·군·구 본청의 실장·국장과 과장·담당관의 직급과 실·과·담당관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관할 시·군·구 조직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구의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시달할 수 있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실·국과 실·과·담당관의 명칭과 사무분장을 시·도와 시·군·구간 사무의 연계성과 그 기능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